



가 정 통 신 문

- 교 권 보 호 -

2018. 9. 11.
전주평화초등학교
☎ 284-9500
www.pyeonghwa.es.kr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안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I 근거

-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II 교권의 개념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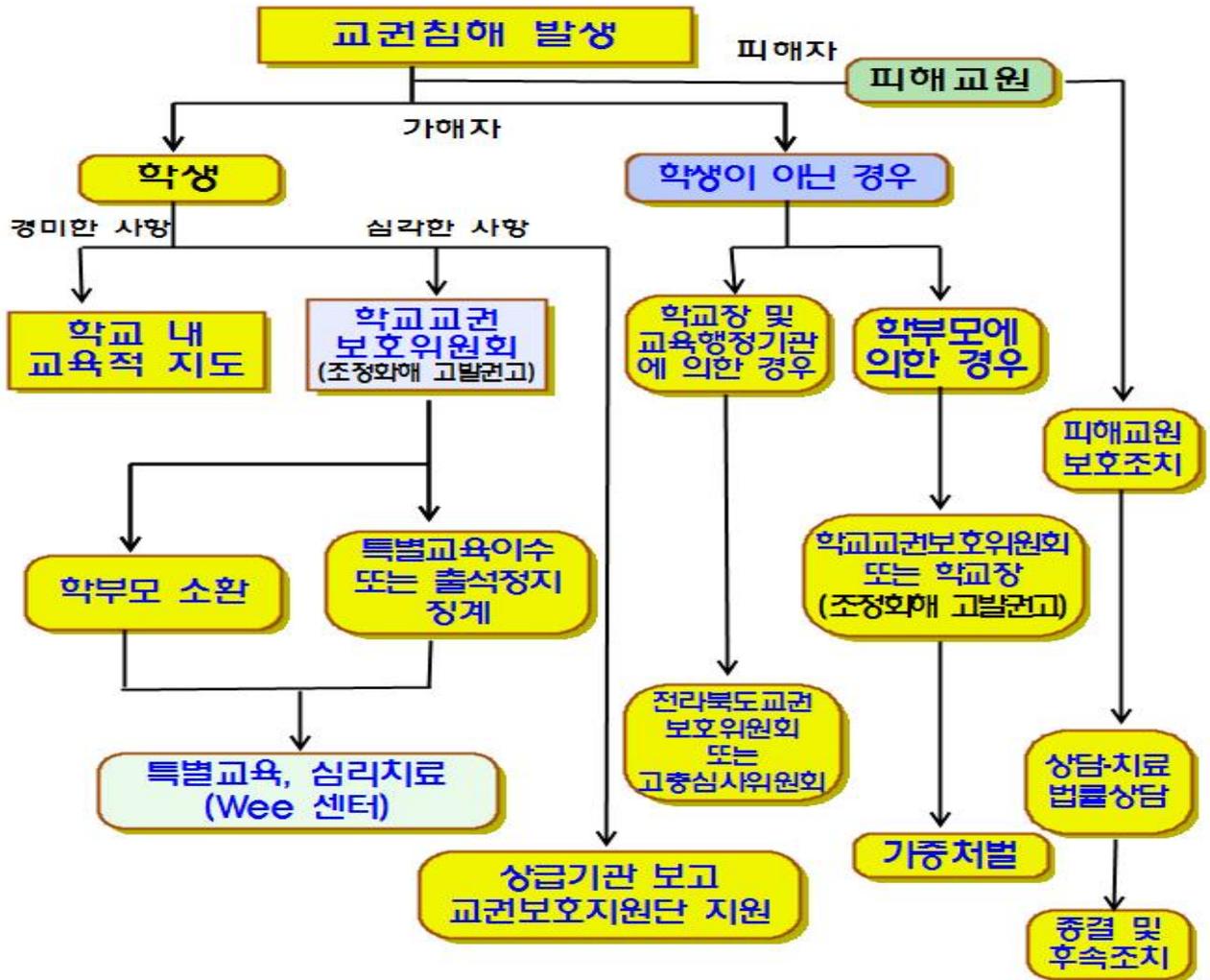
III 교권보호의 목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협박 또는 성희롱·모욕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교권(敎權) 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하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교권 보호적 학교현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IV 교권침해 유형

구분	내용	조치사항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심각 정도에 따라 반성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교 권보호위원회 소집 등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큰 소리로 위협 및 욕설),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안전사고(신분위협,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 등	심각 정도에 따라 구두 및 서면사과, 재발방지 각서, 특별교육이수, 교권보 호위원회 소집, 경찰수사 의뢰 등

V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본교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 9. 11.

전주평화초등학교장